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99

발의연월일: 2022. 12. 19.

발 의 자:김상희·김두관·김승남

류호정 • 박완주 • 양경숙

윤재갑 • 인재근 • 정성호

정태호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요청 후 외교부 검토, 반납명령서 발송 및 공시 등에 1개월 이상소요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혐의자가 그 기간 동안 제3국으로다시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

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여권의 효력상실)"을 "(여권의 효력 상실 및 정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효력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u>!)</u> ① •	제13조(여권의 효력 상실 및 정
② (생 략)		<u>지)</u> ① ·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
		하여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
		<u>지시킬 수 있다.</u>